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2010. 2. 23	규정 제 58호
전부개정	2011. 10. 24	규정 제 78호
일부개정	2013. 1. 31	규정 제 90호
일부개정	2016. 9. 12	규정 제136호
일부개정	2018. 6. 27	규정 제169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4. 16	규정 제17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및 이사, 감사(당연직으로 임명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31. 2016. 9. 12, 2018. 6. 27>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단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

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9. 4. 16>

②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④ 시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2항에 따라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위원회 위원 추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 9. 12>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2>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개정 2016. 9. 12>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⑦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시기 공단 임원직위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제한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의 심사기준에 따른 임원후보자 심사
2. 이사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
3. 상임이사 후보를 이사장에게 추천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4. 16>

③ 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2>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업무의 대행) 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이때, 대행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

사건선택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후보의 추진절차

제10조(공개모집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공단의 임원 공개모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은 공단의 인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개모집계획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공개모집의 원칙) 임원후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공고시기) 위원회는 임원 임기종료 등 미리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인사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임기 중 결원 발생시에는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모집 및 공고 기간) 모집 및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고매체 및 내용) ①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양주시 및 공단의 홈페이지,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 때 공고내용에는 임용예정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보수,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재공고 및 변경공고) ①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 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접수는 위원장 주관으로 간사로 하여금 실무지원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응시원서 접수는 가능한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되, 필요시 방문접수, Fax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접수 할 수 있음

③ 임원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응모할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원서 【별표 1】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5. 기타 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17조(전문가 유치노력) 시장 및 이사장은 우수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시에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채용전문기관, 대학,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임원후보자로 응모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기준·방법 및 추천

제18조(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후보자 심사 기준 【별표 2】에 따라 임원 후보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기타 해당 임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제19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함)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서류 및 면접 심사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할 수 있다. 이때,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 평가한다.

제20조(임원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단에서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결원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

추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임원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이사장 및 감사와 비상임 이사의 경우는 시장,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추천시 후보자 추천서 【별표 3】 및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임명) ① 임용권자인 시장 또는 이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이사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22조(참석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관련자료의 제공)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 및 이사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및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채용과정의 공개) 시장 및 이사장은 임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임원의 추천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토록 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장 보칙

제27조(임원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① 이사장은 상임이사별로 그 직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임이사의 성과관리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동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및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8조(의원면직 제한) 임명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정 제78호, 2011. 10.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90호, 2013. 1.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36호, 2016. 9.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69호, 2018.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78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6. 9. 12>

지 원 서

지 원 서							
공모 직위명							
사진부착 (3.5cm×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주택]() -	휴대폰		E-mail	
		[직장]()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최종학위 논문 주제						
병역사항	병 역	필 ,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자격및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 학	외국어명	점수	검정기관	
경력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		
					~		

(뒷면)

① 관련분야 논문발표 등 업적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 주요업적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②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③ 연구기술, 포상실적 등 기타 업적

--

④ 관련분야 특허·사업화 성공 등 국가발전 기여 업적

--

⑤ 국제화 활동 사항 (국제적인 공동과제 관리, 국제 전문위원회 참여 등)

--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년 0월 0일

지 원 자 : (서명)

[별표 2]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기업경영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 노사화합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개혁의지와 추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산업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 관련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기업성과 공익성의 조화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이윤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 ▶ 관련산업을 통한 시민복지 증진을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

[별표 3]

임원 후보자 추천서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 직위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함

연번	성명	생년월일	비고

*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

(별첨 1 :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년 월 일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